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05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임미애 · 조계원 · 이주희

김남근 · 박해철 · 채현일

박지원 · 윤준병 · 이병진

이재강 · 정일영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

목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차.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등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 략)	2. -----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아.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u> <u>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u> <u>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u> <u>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u> <u>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u> <u>지급받는 소득</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자. (생 략)	5. ----- ----- 가. ~ 자.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차.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u> <u>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u> <u>라 어업권, 양식업권 등</u> <u>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u> <u>자산이나 권리를 행사하지</u> <u>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u> <u>한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u>

	<u>따라 지급받는 소득</u>
--	-------------------